

※7장, 8장, 9장이 차례로 붙어 있습니다.

제목: 윌 김리카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제7장 자유주의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
요약번역자: 이한

1 나는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두 상이한 측면을 구분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그 안에서 자유주의적 정의의 틀이 수반하는 (entailed by)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게 되는 정치적 공동체가 있다. 동일한 정치 공동체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료 시민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 안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목적과 야망을 형성하고 수정하는 문화적 공동체가 있다. 같은 문화, 언어, 역사를 공유하며 이것이 그들의 문화적 멤버십을 규정한다.

2 이제 명백히도 이 둘은 동일한 공동체의 측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두 형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정치 공동체 내에 복수의 문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

3 Q) 자유주의자들은 문화적 다원성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명백히도 그에 대한 답은 자유주의 이론에서 문화적 멤버십이 하는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즉각적으로 몇 개의 질문을 제기한다. 문화적 공동체에 사람들이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정도나 개인의 이해관심 또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 자체가 특정한 문화에 묶여(tied to)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상이한 문화에 속한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가? 사람들은 다른 문화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향유 가능할 때조차도 그들의 고유한 문화의 연속을 보장하는 것에 정당성 있는 이해관심을 가지는가? 만일 그들이 그러한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의의 이론에서 독립적인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이해관심인가?

4 이 질문들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제기되지만 자아(self)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념의 심장을 건드리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발생시킨다: 소수 문화의 권리

5 원주민 권리는 북미의 정치적 삶의 일부다. 미국 인디언들을 위해서는 보호지역(reservations) 체계가 있다. 그 안에서 특정한 인디언 공동체들은 그들의 문화를 보호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보호 능력은, 공동체로서 그들이 이례적인(unusual)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 기대고 있다. 보호지역은 일정한 보장된 권한을 갖고 있는 인디언 공동체에 대하여 특별한 정치적 관할권을 가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인디언 미국인들은 이동권, 재산권 그리고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다.

6 소수 문화의 보호를 위한 이 제도는 자주, 자유주의 경계에 우선하거나 바깥에서 발생하는 쟁점으로서 예외로 다루어진다. 이것은,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을 위한 특별한 정치 사회적인 권리를 확립시킨 입법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정당화는 소수문화가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삶 그리고 ‘보편적’인 통합 양식으로는 불

충분하게 보호되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해주는 그 조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7 Q) 자유주의자들은 소수 문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그 조치들은 일견 자유주의 이론과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많은 다문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성 자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조치를 없거나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다. 그 조치를 제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정치 문화에 그리고 소수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8 그렇다면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그들 이론의 이러한 함의를 명시적으로 방어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 폴즈나 드워킨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9 자유주의자는 소수 문화를 위한 특별한 지위를 반대해야 한다고 왜 흔히 생각되는가? 자유주의적 반대는 자주, 개인의 권리와 집단 권리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의거하여 설명된다 이것은, 캐나다에서의 원주민들의 특별한 지위의 헌법 규정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드러난다. 원주민들이 자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호지역(reservations)의 삶이 그것에 의해 그에 따라 수십년 동안 세세히 규제되었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법률과는 대조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주민의 지도자들은 원주민의 자치 원칙은 더 전통적인 개인의 권리와 나란히 또는 상치되어 형량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집단적 권리의 인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자치는, 원주민 공동체가 비원주민의 이동권, 재산권,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많은 정부 관리들은, 원주민의 자치는 다른 곳에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개인의 권리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최초의 합의는 곧 개인 권리와 집단 권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길을 내어주었다. (gave way)

10 받아들여진 지혜(accepted wisdom)는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적 권리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를 위한 어떠한 제한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잘못(mistake)이라고 생각하며, 북미의 원주민과 다른 자유 민주주의의 소수 문화에 심각한 해를 입힌 잘못이라고 본다.

14 무엇이 그러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공통된 자유주의의 반대를 설명하는가? 왜 자유주의자들이 반대에 왔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자유주의는 특정한 종류의 개인주의-즉, 개인은 도덕적 가치의 궁극적 단위이자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이자 '타당한 요구의 자기 기원적 원천'으로 여겨진다(Rawls 1980, p.543)-와, 특정한 종류의 평등주의-즉, 모든 개인은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정부에 의해 평등한 존재로 평등한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Dworkin 1983a p.24; Rawls 1971, p.811)-에 의해 특징지어져 왔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평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이 권리들이 이동권, 재산권, 공동체에의 참여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이다.

15 자유주의 도덕 형이상학 내에서, 집단적 권리라는 발상을 인정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과는 달리, 공동체는 ‘타당한 요구의 자기 기원적 원천’이 아니다. 공동체는 아무런 도덕적 실체도 갖지 아니하며 그 자체의 고유한 요구를 갖지도 않는다. 자유주의자에게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기여하는 바로 인해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공동체의 요구는 개인의 요구와 궁극적으로 충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 이 자유주의적 원칙의 헌법적 구현은 캐나다와 다른 나라에서 부당한 법에 대한 다양한 투쟁에서 자유주의의 가장 위대한 성취들 중 많은 것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 ‘분리하지만 평등’이라는 법리를 뒤집은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

17 이러한 발전의 역사는 20세기 서구 자유주의의 절정(high points) 중 하나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정치적 도덕에서 평등이라는 강력한 이상이 작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시민들은 정치, 경제,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삶에, 인종, 성, 종교, 신체적 장애와 관계없이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상 말이다.

18 이 자유주의적 원칙의 논리적 결론은 ‘피부색에 무차별한’ 헌법(colour-blind)인 것처럼 보인다. 즉, 사람들을 인종이나 민족(ethnicity)에 근거하여 차등 대우하는 모든 법의 폐지 말이다.

18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처럼 원주민 인디언들은 대부분(predominantly) 분리된 보호지역에서 살며 인디언과 비인디언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복잡한 법 질서 하에서 살았다. 모든 인디언들은 그녀의 부족의 땅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만 땅을 사용하는 권능이나, 그녀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능에는 제한이 있었으며, 토지의 양도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투표권의 경우에는 비인디언이 인디언과 결혼하여 인디언 공동체에 살게 되었을 대에도 제한이 그대로 남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이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 인디언과 비인디언이라는 두 종류의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다. 이 체계를 해체하는 것은 Trudeau의 ‘정의로운 사회’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1969년 정부는 인디언 정책에 대한 White Paper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인디언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종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정부는 인디언 공동체를 동화(assimilation)으로부터 보호했던 보호지역(reservations) 체계를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인디언들은 흩어져 동화될 것을 강요받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자유롭게 결사를 구성할 것을 선택하여, 시장에서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조정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보존할 수 있을 터였다. 결사의 자유는, 피부색에 무차별한 헌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어떤 법적, 헌법적 조력도 받지 못하게 될 터였다.

20 최종 법안에서 언어의 선택이라는 바로 그 관념에서부터, 그 정책은 미국과 UN에서 발전해온 인종 평등이라는 이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었다. 브라운 판결을 따르면서(Echoing)하면서 그 정책은 인디언들이 분리된 기구로부터 분리된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분리되었지만 평등한 서비스는 진정으로 평등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21 그 이슈가 인디언들이 더 넓은 사회에서 겪는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임시적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강조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캐나다 인디언의 특별한 지위에 의해 제기된 쟁점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쟁점이 아니라 ‘특별한 시민 집단에게 (임시적인 기초에서 특별한 권리가 이날) 항구적인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평등한 배려의 원칙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내에서 가능한지의 문제였다. 그리고, 1969년 법안의 자유주의적 입안자(architects)들에게 그에 대한 답은 소수 문화에 집단적 권리를 항구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평등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22 그 법안은 즉각 미디어의 찬사를 받았으며, 야당에 의해서도 자유주의적 정의의 승리로 찬사받았다. 이와는 달리 인디언들은 분노하였으며 이후 6개월 간 인디언들의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난 후, 정책은 철회되었다. 한 논평에 따르면 그 정책은 ‘공중으로부터의 백인 자유주의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었지 인디언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Weaver 1981 p.196)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인디언 자신으로부터는 거의 만장 일치의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마지 못해서 철회했을 뿐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엄격한 개인 평등 원칙으로부터의 어떠한 이탈도,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이나 민족에의 소속(affiliation)에 따라 어떤 개인들은 일등 시민으로 다른 시민들은 이등 시민으로 간주하는 체제로 가는 길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남아프리카의 백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아하르트헤이트 체제를 옹호하면서 소수자 권리에 호소하고 그들의 체제를, 인디언 보호지역 체제와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더 강화되었다. 만일 우리가 인디언들이 그들의 집단적 권리의 이름으로 비인디언들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남아프리카 백인들이 그들의 집단적 권리의 이름으로 흑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23 그리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소수 문화를 위한 집단적 권리를 이론적으로 비정합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24 내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는 이 견해가, 자유주의적 평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번째 과업은 흑인의 분리와 원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유비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25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원주민들이 주류의 삶과 문화로부터의 그들의 분리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분리가 항상 ‘열등함의 표지’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브라운 판결에서 이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때때로 망각된다. 그 법원은 ‘분리되었지만 평등’이라는 이상을, 보편적인 근거에서 거부하지 않았다. 백인-흑인 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분리가 ‘열등함의 표지’로 인식된다고 판시하였다. 분리 학교에서 흑인 아이들이 갖게 되는 동기는 판결의 중대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분리는 항상 고도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옹호로 여겨졌다. 인디언들이 열등함의 표지이자 그들의 동기 부여(motivation)를 해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오히려 강제된 통합(integration)이었다.

26 Michael Gorss는 흑인의 경우와 인디언의 경우를 다음 방식으로 구별한다.

(인용문 시작) 흑인들이 백인 사회로부터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배제되었던 곳에서 (분리되었던) 인이언들- 그들의 고유한 문화, 언어, 종교, 그리고 영역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은,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forcibly) 통합되었다. 이것이 [인디언 교육에 관한 상원 하부위원회가] 강제적 동화에 의해 의도했던 바이다. (Gross p.244)

Gross는 ‘백인이 지배적인 학교에 인디언 자녀를 통합하는 것은 브라운 판결 당시 분리가 흑인에게 미쳤던 것과 동일한 부정적인 교육적, 정서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Gross, p.245) 그러므로 흑인 분리법을 무효로 했던 것에 깔려 있던 원리는 인디언 통합법도 무효로 한다. (struck down) (Gross 248) 인디언의 동화는, 흑인 분리와 마찬가지로, 상원 하부위원회의 말을 빌리자면 ‘인디언 공동체의 중요성과 타당성(validity)을 인정하는 데 실패한 열등함의 표시’이다. 그리고 ‘학교 교실이, 인디언 어린이들이 학교의 막족을 좌절시킴으로써 개인으로서 그의 통합성(integrity)과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분투하는 일로 전장이 되어버림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성취의 음울한 기록’을 초래한다. (Gross, p.242) 비슷한 상황이 인디언들이 학교 이후 인생에서 통합해야 할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발생한다.

27 그러나 인디언들이 분리를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선호의 상호 작용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거나 그런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인디언 공동체의 존속가능성(viability)은 인디언과 비인디언 모두의 이동권, 주거권,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비차별과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를 넘어서는 권리, 그리하여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비난(decried)한, 소수자 권리를 위한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다.

28 이 특별한 필요는 캐나다에서는 두 가지 상이한 형태의 원주민 공도에 질서에 의해 충족되었다. (Asch ch.7) 남부 캐나다의 보호지역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가 희소하여, 인디언 공동체의 안정성은 비인디언들이 (특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디언 토지를 구입하거나 거기에 거주할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캐나다 북부에서는, 그들은 인디언과 이누잇(Inuit) 인구가 그러한 제한 중 어느 것도 없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 질서에서는, 비 원주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거주하게 된다. 환경의 냉대(inhospitability)때문에 비원주민 거주자의 수가 원주민 거주자의 수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보장된다. 그러나 북부 캐나다는 자원이 풍부하며 개발 프로젝트는 일시적인 거주 노동자들의 거대한 유입(influxes)를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 중 매우 적은 수의 노동자들만이 북부에서 7년 이상 머물 가능성이 있어 원주민들은 영주자(permanent resident)로서 과반수를 구성할 것이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비원주민들은 과반수를 형성할 수 있다. 만일 비원주민 일시적 노동자들이 투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들은 아마도 공적 재원을 그들을 위해 생활 편의시설(amenities)들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영화관, 텔레비전 수상기를 위한 접시 안테나, 심지어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리조트까지 말이다. 북부의 많은 원주민들이 그 지역 대부분의 경제 활동의 계절적 성격 때문에 단기 노동 프로젝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그들로 하여금 백인들이 지배적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그리고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일시적인 거주자들은 공공 서비스와 교육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제공될 것

을 요구하면서, 원주민 언어로 서비스와 교육 제공을 희생하는 데 투표권한을 사용할 지도 모른다.

29 이것을 막기 위하여 원주민 지도자들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3년에서 10년의 거주 요건을 갖출 것과 지방 정부에서 원주민의 최소 30퍼센트 대표와 그들이 중대한 원주민의 이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질 것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만일 이 제도가 원주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들은 더 큰 제한을 부과할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는 아마도 이주에 대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리하여 비원주민이 거주할 기회를 단순히 거부함으로써, 투표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피한 남부 모델에 더 가깝게 될 것이다.

30 역사적으로, 증거는 원주민 공동체가 기초하고 있는 토지가 백인들이 정착하고 개발하기에 바람직한 곳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의 원하지 않은 해체를 막은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토지의 양도불가능성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완고하게 유지되는(stubbornly) 인디언 토지를 백인들의 정착에 연 것은 인디언들이 양도가능한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게끔 강제된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인디언들이 부분적으로는 재정적 궁핍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또한 그 결과에 대해 문화적으로 견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파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 개인에게 처분권한을 주는 그러한 조치는 인디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는 이유로 보통 정당화된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평균적으로, 그녀의 공공 아파트에 대하여 평균적인 임차인 그 이상의 활용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더군다나 임차인들과는 달리, 인디언 부족들은 보호지역을 떠나기로 선택할 경우 부족의 펀드에서 1인당 몫을 받는다. 그러므로 보호지역 체계는, 개인의 상당한 선택의 자유를,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비용이 개별적으로 부담될 경우 초래될 집합 행동 문제의 해체 효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여 그들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결합시킨 것이다. 개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 효과는 개별 비인디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디언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

31 그러나 보호지역 체계는, 인종간 결혼의 경우(mixed marriage)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디언과 비인디언이 결혼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러하듯이) 혼합 커플이 보호지역에서 살기 원할 경우 곧 과잉 인구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성원권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기제가 필요하다.

32 미국에서, 그들은 혈통 기준을 사용한다. (blood criterion) 인디언 피가 일정 비율 이상 섞여 있는 사람만이 부족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인디언 배우자도, 그 자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성원권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인디언 배우자가 죽으면 그들은 거주권을 잃으며 퇴거당할 수(evicted) 있다. 비구성원 자녀는 18살이 되면 보호지역을 떠나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혈통 기준의 분명한 결점이 친족 시스템(kinship system)으로 대체되었다. 핵가족에 속하는 모든 이들은 성원권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인종간 결혼 가족이 성원권을 다 얻을 수는 없다. 그렇게 했다간 과잉 인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만일 인디언들이 결혼으로 성원권을 얻는다면 비인디언과 결혼함으로써 성원권을 잃은, 이에 상응하는 인디언이 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최근까지도 인종간 결혼으로 지위를 잃

은 이는 인디언 여성이었다.

33 여기에는 분명한 상충 관계(trade off)가 있다. 성 평등 대 가정의 통합. 만일 토지 기반이 고정되어 있고 과잉 인구의 위협이 있다면 일부 인디언들은, 그나 그녀와 결혼한 배우자를 이주하게 하여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는 가능한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인디언의 문화적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혼과 투표권에 대한 제약이 인디언과 그 배우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34 언어권리와 관련하여 논쟁적인 조치들도 있다. 권리와 자유 현장은 모든 캐나다인 시민들에게 두 가지 공식 언어 중 어느 하나라고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영어 또는 불어(=) 그리고 인구가 허락할 경우 이 언어 중 어느 하나로 모든 수준의 정부와 관계를 맺을 권리도. 원주민 지도자들은 이러한 권리 보장으로부터의 면제를 추구해왔다. 공동체의 새 거주자들이 영어로 공공 서비스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동체의 장기적 존속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새 거주자들은 소수 문화에 온전히 통합될 뿐만 아니라 영어권(anglophone)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은 원주민 공동체에 부분적으로 통합되는 것에도 아무런 이해관심이 없는 새 영어권(anglophone) 이주자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퀘벡의 프랑스계캐나다인들도 가졌던 것이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기를 원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들은, 공공 재정으로 운영되며 영어로 수업하는 교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야 그녀의 자녀들이 영국계 캐나다에서의 역사적으로 지배적이고 특권을 가진(privileged)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삶에 진입하기로 선택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이것은 캐나다에서의 원주민 권리 문제의 일부 측면을 조금만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질서는 전국에 걸쳐 단일한 것이 아니며 끝나지 않은 협상의 결과로서 유동적인 상태(in a state of flux)에 모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제기되는 기본적인 쟁점은 적어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조치들에 공통된 요소는,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인정된 권리와 자유가 소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제한되고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36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민족적 인종적 불평등의 영속화를 위장하는 명백하게 부정의한 것으로 다룬다. 그러나 이 조치와 흑인 분리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공저요성의 판단은 더 복잡하게 되며, 개인의 권리와 집단적 권리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분열될 지도 모른다.

·37 이 직관의 충돌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견 어떤 이는 그 충돌을 ‘개인에 대한 존중’과 ‘집단에 대한 존중’ 사이의 충돌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이 견해에서는, 소수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옹호하는 것은 개인에 비해 집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에 대해 내가 더 정확하다고 믿는 다른 견해가 있다. 그 견해에 의하면, 딜레마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다. 문제는, 개인에 대한 두 종류의 존중이 여기서 문제되고 있으며, 그들은 직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8 우리가 인디언을 인디언으로 존중한다면 즉, 고유한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문화적 유산이 그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인정해야만 하며, 그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제기하는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이 요구들은 관심(attention)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것들이 권리 현장의 요구 중 일부와 충돌하더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북부의, 원주민 토지가 단지 몇몇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 정부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투표권이 박탈된다는 이유로 찢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인디언과 이뉴잇 족이 단지 소수 백인들이 국가 전역에 걸쳐 이주권을 온전하게 향유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문화적 공동체를 뺏겨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것 같지 않다. 만일 원주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삶을, 비원주민들에 대한 거주 요건을 높임으로써만, 또는 토지 기반의 양도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만 보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치들은 공정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 없이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원주민 공동체가 비원주민 다수의 결정에 취약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디언과 이뉴잇들을 ‘평등한 존중을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원주민들이 직면하는 잠재적으로 대단히 파괴적인(devastating) 문제를 무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즉 문화적 멤버십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직면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인정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인종이나 민족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39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캐나다인으로 즉 공통된 정치공동체의 시민으로 존중한다면, 우리는 평등한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권리의 불평등한 분배는 분명 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인디언 여성이 그녀의 자녀를 위해 공적 재원으로 지원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발생하는 차별 받았다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또는 백인 남성이 그가 거주하고 기여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40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진정한 직관의 충돌이 있으며, 그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에 관련된 두 상이한 고려사항 사이의 충돌이다.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 많은 상황에서 그 둘은 완벽하게 양립가능하며 사실 일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에서 상이한 시민권의 균리는 문화적 공동체를 원하지 않은 해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등적인 시민의 권리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시민권과 문화적 멤버십의 요구는 반대 방향으로 결론을 끌고 간다. 둘 다 중요하며 어느 것도 다른 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 같다.

41 원주민들의 특별한 지위는 이 충돌의, 불안정하기는 하나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충돌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의 일상 정치에 고질적인(endemic) 것이며, 소수자 권리의 당야한 제도가 이런 이치에서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

42 흔히 해석되는 바대로의 자유주의는 이 딜레마의 반쪽 중 하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화적 멤버십에 아무런 독립적인 비중을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수 문화의 존재에 미칠 결과에 상관없이 평등한 시민권의 권리를 요구한다. 이 평등관은 개인의 문화적 멤버십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에서 적용된다면 정치공동체

전체에 단일한 문화를 산출하는 경향, 그리고 고유한 소수 문화 공동체의 원하지 않은 동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공동체의 계속되는 존재는 선택의 제한과 기회의 차등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적 평등이 평등한 시민권의 권리를 요구하고, 공통된 '기회의 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요구한다면, 소수 문화는 위협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멤버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43 우리가 자유주의 이론의 이 실패 때문에 골치아파 한다면,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한 가지 대답은 자유주의자들이, 문화적 멤버십이 그들 자신의 이론에서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잘못 해석해왔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보편적 통합이나 인종 무차별적 헌법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유주의자들은 소수 권리의 가능한 정당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다른 대답은 자유주의는 문화적 멤버십에 아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배제한다고 하면서 자유주의는 불완전하거나 문제되는 소수 문화 권리에 전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문화적 멤버십의 중요성과 소수 권리의 정당성을 인정할, 어떤 다른 도덕 이론이나 일련의 가치들을 찾아야 한다.

44 캐나다에서 원주민 자치의 지지자들이 이 두 번째 접근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원주민 권리를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옹호하였다. 자유주의는 몇 가지 이유에서 불완전하거나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원주민들의 조상이 이 땅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Cardinal 1969; Dene Nation; Robinson and Quinney) 다른 이들은 인디언과 이누잇이 국제법하의 '만민people'으로 적절히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Sanders 1983a pp.21-5; Robinson and Quinney pp. 141-2; L.C. Green p.346) 어떤 이들은 원주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리하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상이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Ponting and Gibbins 1986 p.216) 그러나 다른 이들은 원주민 공동체 그 자체가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도 정당한 도덕적 요구를 갖기 때문이다. (Boldt and Long 1985b pp.343-5) 이것들은 모두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원주민 권리를 옹호하는 흔한 방식들이며, 이것은 우리의 직관을 비자유주의적 이론이나 가치 내에서 원주민 권리를 찬성하도록 위치지운다.

45 그러나 나는 첫번째 대답-소수자 권리와 자유주의적 평등을 화해시키려는 시도-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수 권리의 지지자들에게 두 번째 접근은 두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다양한 비자유주의적 논변은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다. 둘째, 그 논변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논변들은 소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두려움과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논변들은 왜 소수 권리가 아파르트헤이트로 가는 첫번째 단계가 아니며, 개인 권리의 막대한 침해를 집단의 이름으로 침해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반대자들은 그 논변이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나,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설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좋건 나쁘건(For better or worse)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고 관찰할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predominantly) 비원주민 판사와 정치가들이며, 그러한 사람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 조치들을 정당화하

는 것은 중요하다. 원주민들은 그들 고유의 경험에서 끌어온 자치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비원주민 캐나다인들, 예를 들어 연방대법관들이 원주민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들 자신의 경험과 전통에 연결짓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유주의의 표준적 해석에서 원주민 권리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그리고) 특권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그 조치들은,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그 폐지를 선전하는 트루도(Trudeau)를 좋아하게끔 하는 종류의 의심과 함께 바라보아질 것이다. 원주민 권리는 자유주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정치 관행의 본질적인 구성 부분으로 간주될 때에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46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첫번째 접근이 두 가지 가능한 이득을 준다. 첫째로 그것은 문화적 멤버십의 문제를 검토할 기회를, 그리하여 개인성과 공동체성에 관한 이론을 충실하게 (flesh out)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우리의 문화적 멤버십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일부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설명하면서 인용해 온 부분이다. 둘째로, 자유주의자들이 소수 권리에 대한 옹호를 발견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소수 권리와 자유주의적 평등 사이의 정치적 법적 충돌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질지도 모르난. 예를 들어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원주민 공동체의 특별한 지위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당화가 있는지를 의문스러워했으며 그들은 인디언법(Indina Act)의 해체(dismantling)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그것은 캐나다 법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쳐왔다.

47 실제로, 법 앞에 평등할 권리에 대한 캐나다에서 역사적인 사건은 인디언법 사건들이었다. 1982년 헌법 수정 이래에,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그 권리가 순수히 형식적인지(즉, 법의 공평한 적용만을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그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실질적인 권리인지에 대하여 불안하게 흔들려 왔다. (wavered on whether) 그 권리는 인디언과 비인디언 위반자를 차등 대우한 주류규제에 대한 1970년 판결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권리로 해석되었다. (Regina v. Drybones [1970] SCR. 282) 그 법은, 인종적인 구분이 평등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사람들은 그 판결을 사법 적극주의의 새 시대를 연 것으로, 그리하여 부정 의하고 차별적인(Morton p.73) 법들을 폐지하는 것에 이를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인디언 법의 다른 부분이 도전받았을 때, 법원은, 인디언 법의 전체 구조가 보호지역을 보호하고 인디언들에게 특별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 무감한 평등권 보장의 해석에 의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법원은 본질적으로 그 입장을 뒤집어 인디언의 특별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 해석으로부터 후퇴하였다. (Attorney-General of Canada v. Lavell [1974] SCR 1349) 머튼이 이야기하듯

(인용문 시작) 인디언법을 통하여 수여된 특별한 지위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를 화해시키지 못한 법원의 무능력은, 1960년 권리 장전 하에서 미국 스타일의 Brown v. Board 식의 평등 판결에 대한 잠재력을 훼손하였다. 인디언 법의 유효성을 부인하게 될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기를 꺼려하면서 법원은 *Drybones* 에서 표명되었던

(articulated)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 관을 포기하였으며 절차적인 정의(definition)로 돌아왔다. (Morton p.74) (인용문 끝)

이러한 변화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관철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몇 년 후 명백히 여성을 차별하였던 법이 평등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다. (Attorney-General of Canada v., Bliss [1979] I SCR 183) 캐나다의 소수 권리 전통 보호와 자유주의적 평등 진작 사이의 이같이 인식된 선택에 직면하여 법원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49 1982년 헌법의 평등에 관한 절(15절)은 분명히도 차별을 금지하는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그 새 절은 여전히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인디언의 특별한 지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사와 여전히 관계될 것이다. 만일 15절에 대한 더 강한 해석이 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특별한 지위와 양립 불가능하다면 그 절은 심각하게 약화된 형태로 해석될 지도 모른다. 성차별과 종교 차별에 반대하는 사법적 보호를 위한 투쟁은 그러므로 소수 권리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50 그러므로 원주민 권리를 자유주의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내에서 옹호하려고 시도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철학적인 이유도 있다. 소수 권리에 대한 현재의 자유주의 적대감은, 내가 다음 두 장에서 논할 바와 같이 잘못 인도된 것이다.(misguided)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단순하거나 명백한 실수의 결과가 아니며,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깊이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여도 자유주의적 정의론 내에서 그 문제를 고칠 간단하고 명백한 방법은 없다. 자유주의 이론의 쟁점은 트루도(Trudeau)가 한때, 1969년 안을 옹호했다가 철회한 이유에 대해 답하면서 시사했듯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인용문) 우리는 자유주의 이론을 적용할 때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었고 실용적이지 못하였다는 내용(Quoted in Weaver 1981 p. 185) (인용문 끝)

나는 그 문제가 실용주의나 편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논할 것이다. 소수 문화를 위한 집단적 권리는 자유주의자들의 성찰되지 아니한 습관이나 편견하고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자유주의적 원칙, 심지어 이론적으로 가장 정교한 정식화가 이루어진 원칙과도 직접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옹호에 대한 탐색은 우리를 자유주의 이론의 심장부(heart)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끝>

제목: <자유주의, 공동체, 문화>의 제8장 “문화적 멤버십의 가치”

저자: Will Kymlicka

요약번역자: 이한

1 우리는 자유주의의 존재론(ontology)이 오직 개인들만, 그 각각이 평등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자유주의 내에서 소수의 권리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1) 문화적 멤버십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자유주의 사상에서 더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다. 즉, 자유주의 도덕 존재론(liberal moral ontology)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개인은 특정한 문화적 공동체의 개별 성원으로 여겨진다. 그에게 그 문화적 멤버십은 중요한 선이다. 그리고 (2) 소수 문화 공동체의 성원들은, 문화적 멤버십의 선에 관한 특정한 종류의 불이익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 불이익의 교정(rectification)은 소수자 권리의 규정(provision)을 요구하고 정당화할지도 모른다. 즉, 우리는 문화적 공동체에서의 성원권이 자유주의 정의론의 관심사인 이득과 부담을 분배하는 유관한 기준(relevant criterion)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는 이러한 두 입증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일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2 이 두 입증(two steps)은 다음 두 장의 기초를 이룰 것이다. 각 경우에 나는 롤즈와 드워킨이 국민국가 내에서 평등한 권리와 자원에 대하여 제시하는 논변과 동일한 논변이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국가 내에서 소수 문화의 특별한 지위를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첫째로 나는 자유주의적 개인관을 살펴볼 것이다. 자유주의의 개인에 대한 설명은 시민권과 문화적 멤버십 양자 모두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가? 일견 보기에 롤즈의 이론은 전망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 이론은, 개인이 문화적 멤버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심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이해관심은 그가 평등한 시민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해관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너무도 중요하여 모든 이들의 특정한 기본적 자유-예를 들어 정치 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일한 정당성 있는 근거는, 모든 이들을 위한 더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의 전반적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유일한 정당성 있는 근거는, 다른 이들보다 덜 자유로운 사람이 그러한 제약이 없었을 경우보다 더 큰 기본적 자유의 체계를 확보하는 것 뿐이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평등한 자유의 체계는 절대적이다’ (Rawls 1971 p.506n)

4. 시민권의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이 주장이, 그의 정의의 두 원칙으로 정식화된 롤즈의 이론을 소수의 권리와 양립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롤즈가 자유의 우선성에 대하여 과하는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고려되고 있는 문화적 멤버십을 보호할 어떠한 수단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Neither of the two qualifications Rawls makes to the priority of liberty will support any of the measures for protecting cultural membership under consideration) 실제로 그러한 수단은 그 두 조건 모두를 위배한다. 그러한 수단들(measures)은 더 적은 기본적 자유를 갖는 이들 (예를 들어 원주민 보호지역reserves 이나

토지homelands에서 재산권과 투표권이 제한되는 백인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하여 불평등한 자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갖는 이들(원주민 거주자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들은, 전반적인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멤버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수단들은 적어도 롤즈가 정의한 바의 기본적 자유에 전적으로(utterly)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5 그러나 시민권의 자유(liberty of citizenship)는 왜 그토록 중요한가? 무엇이 개인에게, 문화적 멤버십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들의 시민권에 대한 자유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해관심을 부여하는가? 내가 이미 논했듯이 롤즈는, 가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고 수정할 자유는, 좋은 삶을 영위함에 있어 우리의 본질적 이해관심을 추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은 롤즈에 의하면, 양심적이고(conscious) 목적을 가진(purposive) 주체(agent)로 간주된다. 그녀는, 무엇이 갖거나 하거나 성취하기에 가치가 있는가에 관하여 그녀가 지니는 신념에 기초하여, 특정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이러한 신념들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하는 것을 왜 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념들에 대하여 틀릴 수도 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일에서부터 책을 읽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들 중 많은 것에 대하여 회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신념들은 (These beliefs underlie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we make in life)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에 깔려 있으며 우리는 이 신념들이 참 또는 거짓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care) (어느 누구도 falsehood에 기초하여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롤즈는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지성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건들은 그러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는 데 필요한 (시민권의 자유에 의하여 확보되는) 개인적 독립(personal independence)의 보장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들의 현재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행위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나 자원을 박탈당함이 없이, 사회에 의해 처벌받거나 차별받음 없이 그 신념들을 회의하고, 다른 신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1, 2장을 보라)

6 우리의 활동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발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롤즈가 자존감이라 부른 '그의 삶의 계획이 수행할 가치가 있다는 감각'에 대하여 결정적이다. 자존감(self-respect)는 롤즈가 이야기하듯이 모든 합리적인 삶의 계획의 일부라기보다는 전제조건(precondition)이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목표가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활동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there would be no point to our activities)(Rawls 1971 p.178)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검토하고 그 가치를 확인할 자유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왜 자유가 롤즈에게 그토록 중요하며, 그가 물질적 이득과 공직의 특권보다 자유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단 물질적 보장이 확보되고 (Once material security is ensured) 그리하여 자유의 효과적인 행사에 필수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유를 더 큰 부와 교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반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의 가치에 관한 신념들을 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그 신념들은 어디서 오는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특정한 선택지를 자유롭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

속 견지하는 신념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신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택지의 범위는 선택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는 완전 처음부터 de novo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We do not start de novo) 수많은 개인, 때때로 세대를 걸쳐 발전되고 테스트 되어온 한정된(definite) 삶의 이상과 형태들을 검토한다. (Rawls 1971 pp.563-4)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lead our lives)에 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이 결정들은 언제나 활용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로부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문제, 상이한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선택의 맥락에서 고르는 문제이다.

8 이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택지의 범위는 우리의 문화적 유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이한 삶의 방식은 단순히, 물리적 움직임(physical movements)의 상이한 패턴이 아니다. 물리적 움직임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움직임들이 우리의 문화에 의하여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그것들 삶을 사는 한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인정된 활동의 어떤 패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활동의 이 패턴들이 실제이건 상상이건 우리가 들어본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에 현재하는 까닭에 그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들은 잠재적인 모델이 되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역할을 규정한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우리가 이미 특정한 삶의 형태(가족, 종교, 성,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지지하게 될 수도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모두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문화적 서사 속에 상황지움으로써(situated) 가치 있는 것으로 살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역할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론 그 역할은, 우리가 자라나서 접하게 되는 역할들을 포함한다)

9 선택지들과 선택들이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되는 과정들은, 언어적이며 역사적인 과정이다. 한 행동 과정(course of action), 우리의 언어가 그 활동의 의미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부여하느냐,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언어가 이 활동들을 생생하게 만드는 방식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다. 우리의 언어와 역사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활용가능한 선택지를 알게 되는 매체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성적인(intelligent) 판단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문화적 구조에서도 추상화되어 판단되는 물리적 움직임의 몇 가지 상이한 패턴을 탐구하지 않는다. (We do not explore a number of different patterns of physical movement, which might in principle be judged in abstraction from any cultural structure) 그렇기 보다는 우리는 바로(precisely) 문화적 구조를 검토하고 그것이 가진 가능성과 그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규정하는 상이한 활동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

10 이로부터 무엇이 따라나오는가? 자유주의자들은 문화적 구조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생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활용가능한 선택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지성적으로 그 선택지들의 가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풍부한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확보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화적 구조 없이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적절한 롤 모델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낙담(despondency)과 현실도피(escapism)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문화가 그리하여 롤즈 자신의 자유에 대한 논변의 중대한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는 결코 정의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그것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그는 다른 기초적 선에 비교한 자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묻기는 하나, 그것과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아마도, 내가 나중에 제안할 바와 같이, 그는 암묵적으로 저어치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어서 공동체의 기본 구조 내에서의 어떠한 자유의 행사도 문화적 멤버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적 멤버십은 여전히 기본적인 가치이며,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평등한 배려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중요성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문화적 멤버십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게, 문화적 멤버십에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 롤즈가 이야기하듯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사회적 조건은 거의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하려고 한다. (Rawls, 1971, p.440) 문화적 멤버십의 상실이 그러한 조건 중 하나다.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자유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롤즈 자신의 논변이 기본적인 가치로서 문화적 멤버십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논변이기도 하다.

12 문화적 구조가 선택의 맥락으로서(context of choice) 인식되는 점은 이 논변에서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가 문화적 멤버십을 롤즈의 정의의 구조(scheme) 내에서 기본적인 가치로 간주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며 우리의 삶의 계획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돕는다는 점에서 좋다는 점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기로 악명 높은 ‘문화적 구조’나 ‘문화 공동체’와 같은 용어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견해에서 규범(norms), 가치,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 현재하고 있는 제도(예를 들어 교회에서의 멤버십, 정당 등등)에서의 변화는 그 사람의 문화의 상실에 맞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문화의 매우 다른 의미로, 문화적 공동체나 문화 그 자체를 언급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이 견해에서는, 문화적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그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영위할 가치가 있다고(worthwhile) 생각하지 않게 될 경우 문화의 성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때조차도 계속 존재한다.

13 예를 들어, 프랑스계 캐나다인 문화(French-Canadian culture)는 1960년대에 래디컬하게 변모하였다. 그것은 첫번째 의미에서는 ‘문화’의 종말이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계 캐나다인 삶을 특징지었던 제도들(예를 들어 로마-카톨릭 교회, 교구 학교parochial schools, 퀘벡 국가연합당[Union Nationale political party]) 중 아주 소수만이 그 문화의 구성원들의 폭넓은 다수의 계속되는 충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안정적으로 지속(be secure)될 수 있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프랑스계 캐나다에서 ‘조용한 혁명’이라는 적절한 명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문화적 공동체의 존재(existence) 그 자체는 결코 의문시된 바 없으며, 원주민 공동체가 허넷 위협받고 있는 것과 같이 원하지 않은 소멸이나 동화(assimilation)에 의해 위협받은 적도 결코 없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문화적 멤버십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도 없었다. 즉, 사람들의 선택의 맥락의 존속에의 위협도, 그들의 문화적 선택의 맥락의 존속에의 위협도, 그들의 문화적 구조가 그들에게 의미 있게 만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는 성원들의 능력에 위협도 없었다. 이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의미에서

의 문화적 멤버십이 롤즈의 이론에서 자유를 위한 논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가치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의 성격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 능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그들의 선택 능력에 대한 제한이 된다. 선택 맥락으로서 문화 구조에 대한 배려는 이와는 달리, 우리 삶의 계획의 가치를 판단할 우리의 능력과 자유와 상충한다기보다는, 부합한다. (accords with) 첫째 의미에서의 문화의 종말(demise)은 프랑스어권(francophones) 사람들 그들 자신이 그들의 (안정적인) 선택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 선택들 때문에 발생하였다. 둘째 의미에서의 문화의 쇠퇴는 원주민들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으며, 그들의 선택 맥락을 훼손한다.

14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여 문화의 구성원으로서(persons qua member of culture)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관념은, 그러므로 비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국가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최선의 관념을 그 문화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강제하여야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논변은 단지 문화적 성원군은 좋은 삶을 사는 데 있어 우리의 본질적인 이해관심을 추구하는 일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이며, 성원권의 고려는, 공동체의 각 성원들의 이해관심에 대한 평등한 각 성원들의 이해관심에 대한 평등한 배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15 그러나 우리는 그 논변의 남용을 경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슷한 논변을, 공동체 그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그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비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 구성원들이 언론, 출판, 종교, 성 관습 등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그들의 문화는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모든 사회는 촘촘한 그물(seamless web)인 공공 도덕, 즉 그 사회의 안정성 자체에 필수적인 존중을 갖고 있어서, 종교적 성적 문제에서의 이탈을 사회의 구조 자체를 위협에 빠트리지 않고서는 관용될 수 없다고 이야기된다. 물론 우리는 그 논지를 이야기 하기 위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 데블린 경은 영국 사회에 대하여 유사한 논변을 개진한 바 있다.

16 그 논변의 문제점은 어느 경우에서나, 치명적인 모호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 해석에서 ‘문화’는 현재 그것을 특징지우는 규범에 의해 정의되며, 따라서 정의상, 사람들의 종교적 소속(affiliation)에서의 어떠한 상당한 변화도 그 옛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전적으로 흥미롭지 못한 것이다. (uninteresting)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적 공동체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결코 시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위협받는다기도 시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해석에 따르면 ‘문화’는 내가 이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 그와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 바처럼, 공유된 유산(heritage)(언어, 역사 등등)을 가진 개인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재로 정의된다.(주석2) 그러나 그렇다면, 개인들에게 종교나 성행위(sexual practices)의 자유를 허락하면 그것이 영국이이건 이란이건 공동체의 붕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도로(wildly)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데블린은 나중에, 그는 단지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유가 그 공동체의 존재 그 자체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는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살인, 자살, 알콜 중독과 공공 기관에서의 위

기 등이 심각하게(massive) 증가함으로써. 그 문제는 드워킨이 지적했듯이, 데블린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사회의 존속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취급한다. (Dworkin 1977 ch.10)

17 데블린에 대한 드워킨의 반박은 문화적 공동체의 특정한 지점에서의 그 공동체의 성격 사이에 내가 그은 구분을 요구한다. (이는 위 책 5장에서 테일러에 대한 드워킨의 답변에서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동성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문화 구조의 성격을, 문화 구조의 존재를 위협에 빠트리지 않고도 바꾸었다. 이 구분은 우리가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를 지닌 나라를 논하건, 문화적으로 다운적인 나라를 논하건 요구되는 것이다. 이 구별을 그을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리를 자유주의 내에서 옹호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그 자체를 옹호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가치들은 개인의 선택 자유와, 개인들이 그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확고한 문화적 맥락 모두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주어진 문화적 공동체의 성격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는 데블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화적 멤버십을 기본적 가치로서 파악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적 가치는, 선택의 맥락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공동체의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문화적 맥락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주어진 문화적 공동체의 성격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블린의 주장을 반대하게 한다. 영국의 문화 구조의 동성애 혐오적인 성격은 성적 라이프 스타일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영국의 문화 구조를 보호하는 바로 그 이유-즉 그 문화구조가 의미 있는 개인적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그 이유-를 훼손한다.

18 이것은 문화적 멤버십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왜 비자유주의적인 것(illiberal)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이유다. 아마도 어떤 문화적 공동체는 영국보다는 그들의 관행을 해방하는 능력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 (영국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이 점에 있어 더 유능하다고 통상 생각하여 왔다.) 그런데 만일 영국이 (성적 라이프 스타일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문화 성격이 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다른 문화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쨌거나 이 잠재적인 문제는 소수 문화와는 특별히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any event,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is potential problem has nothing in particular to do with minority cultures) 그것은 다수 문화 또는 국민국가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국민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건 간에 그들은 소수자 문화가 있는 국가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함 없이 자유화하는 것(liberalizing)은, 일단 우리가 선택의 문화적 맥락을 보장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이 모든 나라에서 직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과업은, 일부 소수 문화의 경우에는 난해한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난점에 대하여 우리가 문화적 공동체의 성격과 문화적 공동체의 존재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함으로써 반응한다면, 그들은 데블린의 영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에서도 자유주의를 옹호할 가능성마저 포기한 것이다.

19 의문의 여지 없이 사회의 존속 자체가 정말로 (다른 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는) 성원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의 고립된 부족

에서,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그들이 (최근에 도입된) 텔레비전에서 방금 막 본 슈퍼맨의 feat를 모방하려다 절벽에서 점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사회에서 술(liquor)을 규제하지 않고서 들어오는 것은 성인들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무한한 현대 세계에서 스스로 나아가는(make our way) 개인으로서 우리의 능력은 사실, 우리가 처분가능한 자유의 위험과 한계를 지적하는 사회적 이해의 구조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구조가 결여된 곳에서는, 그러한 자원을 규제되지 않은 채로 도입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제한 없이는 그 구성원의 막대한 수가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사회의 밑바닥(skid row)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공동체가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러한 일시적인 특수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거부하는 자유주의의 승리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제노사이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만일 특정한 자유가 정말로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훼손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비자유주의적 조치였을 조치들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수단들은 문화의 성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하여 초래될 수 있는 (내생적이거나 외생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그 문화가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사회를 향해 주의깊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하여, 일시적인 가치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상은 여전히 모든 개인들이 문화적 구조에 의해 제공된 풍부한 가능성들 중에서 그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일부 인디언 지도자들은 그들의 더 제약적인 특별한 권리들을 인디언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현대 세계의 모든 자원을 처분가능하도록 갖춘 상황으로의 (바람직한) 이행에서 충분한 강건성과 통합성을 지니면서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확히도 그런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옹호하였다. 인디언 공동체들은, 현재로서는 인디언들이 그녀가 일단 문화적 구조가 그 건강한 강건성과 유연성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면 향유할 모든 자유를 향유하게 내버려 두기에는 백인 다수에 의하여 너무나 약화되고 해체되었다고 한다. (주석3)

20 장기적인 완전한 자유의 이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단기적 전략은 그 고유한 위험이 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가피한 일시적인 제한으로 처음에는 옹호되던 것들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결국 옹호될지도 모른다. 일시적인 제한이 단지 그러한 규제가 없는 이상적 사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한 전략은 재평가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가 비자유주의적인 조치들이 문화적 멤버십을 존중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하기 이전에,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체되는지 (disintergrate) 그리고 우리가 자유화의 산고(birth-pangs)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질문을 9장 말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21 어느 경우든 이 가능성-즉, 드문 경우에 어떤 일시적인 자유주의적 조치가 문화적 멤버십의 중요성에 대한 호소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만연해 있는 자유주의적 두려움에 대해 문제 없다고 장담해주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does nothing to warrant the pervasive liberal fear about recognizing that importance) 그것은 대부분의 문화에 전혀 적용될 일이 없으며 그 장기적 목표-이상적으로 정의로운 문화적 공동체-를 모든 개인이 그녀가 자신에게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할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온전한 범위를 보유하는 사회라는 견해는 어쨌거나 전혀 도전하지 않는다. 의문의 여지 없이 모든 갖가지 종류(stripes)의 정치적 종교적인 많은 근본주의자들, 최선의 공동체는 그들이 선호하는 종교적, 성적, 미학적 관습 이외에는 모든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관념은 그들에게 어떠한 지지도 보내주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그녀가 그녀의 문화적 공동체에서 선택하는 대로 그녀의 삶을 살 공정한 몫의 자원과 자유를 가지는 한, 문화적 선택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는 적합하게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본주의적 저치의 증진은,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호소하기는 커녕 그것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근본주의적 가치는, 우리가 문화적 성원권을 고려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 그것이 의미있는 개인적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이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2 근본주의자들은 물론, 이때까지 제시된 논변에 훨씬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반대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선택의 맥락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공동체에서의 성원권에 구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공동체 관행의 공유된 목적에의 참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bound up with)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 반론에 따르면 한 문화의 일부 구성원들이 만일 문화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예를 들어 그것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비판함으로써-이것은 구성원들의 자기 존중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원주민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비원주민들의 행동에 의해 훼손되는 때와 마찬가지로 한다. 개인들의 정체성은 현재 시점의 문화를 특징지우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구성되며, 이란인들의 사회의 세속화나 동성애를 자유화하는 영국법의 실행은, 이란인이나 영국인의 자존감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된다. 비록 개인으로서 그들이 여전히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자원의 공정한 몫과 평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23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것을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목적에 의하여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 주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내가 4장에서 논하였듯이 그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좌우간(In any event), 그 견해의 잠재적 비자유주의성은 나의 제안에 arise on 하지 않는다. 나의 제안은 문화적 공동체는, 그 안에서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선택하고 추구하게 되는 선택의 맥락을 제공해줌으로써 우리의 자아 이해에 진입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멤버십에 대한 이 이해는 특정한 시점의 문화를 특징지우는, 공유된 목적과 문화적 멤버십이 어떠한 필연적인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기본적인 선택의 맥락으로서, 문화적 공동체이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지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공동체의 성격이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

24 그러나 소수 문화를 위한 중요한 쟁점은 남는다. 문화적 멤버십이 기본적인 가치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문화적 공동체에서의 성원권을 함의하는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이치에 닿게 할(make sense) 문화적 구조를 요구할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배려해야 한다(be concerned about)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캐나다의 원주민들의 경우에 왜 그냥 그들이 잉글리시 캐나다로 이사하여 그곳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가? 소수 문화 공동체가 해체되게 내버려두고(disintegrate) 그런 불운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

25 이것은, 캐나다인 원주민들의 권리를 자유주의 이론 내에서 방어하려는 Schwartz의 최근의 시도에서 제기된 질문이다. 그는 문화 구조가 사람들에게 선택의 맥락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문화 공동체에 구성적인 방식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의 보호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요구권(claim)도 갖지 않는다. 우리는 문화적 멤버십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함에 의하여 만일 우리가 그들의 다른 문화로의 동화를 촉진시킨다면 우리의 정당성 있는 의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원주민의 권리는 그가 생각하기에,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활용가능한 선택지를 풍부하게 하고 확대시킴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근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원주민 권리를 옹호하는 기이한 방식이다. 실제로, 우리는 ‘원주민 권리’라는 말을 왜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캐나다인 일반이 아니라) 비원주민 캐나다인들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 개선되거나 풍요로워지느냐와 상관없이 원주민이 그들의 문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용어의 통상적인 함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권리로 만드는 것은, 어떤 다른 정책이 캐나다 정치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의 이익에 더 잘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헌법에의 권리 구축constitutional entrenchment가 바람직한 이유이다) 이와는 달리, Schwartz에게는, 어떤 이의 문화적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그녀의 의미 있는 선택의 범위를 보호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은 다른 문화로의 그녀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법과 나란히 고려되는 것이다. 슈바르츠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주장은, 원주민의 특별한 지위는, 자유주의 원칙과 양립은 가능하지만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원주민은 그 특별한 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공 있다는 말인가?

27 슈바르츠는, 원주민 권리에 대한 그의 옹호가 그 권리들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소수자의 권리는 통상적으로 역사적 공동체에서의 성원권의 중요성에 대한 호소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 ‘역사-기반적 집단주의적 주장’을 비자유주의적인 것이라 보며, ‘그 권리가 역사적 발달과는 다소간 독립적인 평등한 개인의 공동체’로서 캐나다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의 그림과 상충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들이 역사적 공동체에 속한다는 점은 그들의 정당한 요구와는 무관하다. 그가 이야기하듯이 ‘캐나다는 평등한 개인들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역사적 공동체의 집합체(agglomeration)로 보는 것보다는 낫다’. 만일 우리가 정의에 대한 역사 기반 집단주의적 관념을 거부한다면, 원주민 권리는 소수 집단을 위한 문화적 멤버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 권리들은, 각 시민들의 문화적 멤버십과는 무관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주는 이득에 의하여만 정당화될 수 있다.

28 인디언의 특별한 지위가 모든 이들의 선택 범위를 풍요롭게 해주는가? 의문의 여지 없이 그렇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문화적 정책도 그러하며, 그 중 많은 수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러할 것이다. 왜 인디언이나 이뉴잇 족을 영국계 캐나다인 문화에 통합하는 것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인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보조함으로써 문화를 풍요롭게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것도 당연하다. (This might well provide) 왜냐하면 그 조치는 다른 이들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정보는 (분리된 인디언 보호지역이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뉴잇족 공동체와는 달리) 일반적인 인구(general population)가 더 쉽게 접근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29 공평하게 이야기하자면, 슈바르츠는 원주민 권리가 캐나다인의 선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원주민의 권리를, 그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특별히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이 만일 그들의 역사-기반 집단주의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망당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한다. 그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이상을 증진하지만, 역사-기반 집단주의에 토대를 둔 헌법적 프로그램을 충족시키거나 가능한 최소한도로 모욕적인(affront to) 헌법 질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Schwartz p.39) 그러나, 그 모욕(affront)이 오도된(misguided) 정의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그것에 굴복하는 대신 사람들의 오도된 견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30 슈바르츠의 대답은 아마도 역사-기반 집단주의는 그것의 존재를 없애도록 논하기에는 우리의 정치 문화와 제도에 너무도 깊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슈바르츠는 그것이 (다른 많은 서구 민주주의나) 우리 정치 문화에서 왜 그것이 그토록 만연한 (pervasive) 특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역사-기반 집단주의에 놓인 진실의 알맹이(kernel)를 놓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공동체에 중요한 방식으로 얽매어(bound)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그냥 이식(transplant)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누군가의 양육과정(upbringing)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문화적 멤버십은 우리의 정체성과 능력의 감각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감각은

31 개인적 정체성과 문화적 멤버십 사이의 연결 관계는 몇 가지 고려 사항에 의해 시사된다. 언어사회학자들은 우리의 언어가 특정한 활동의 내용을 파악하는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이며, 충성과 적대감(animosities)를 위한 참조물’, ‘사회적 목표의 표지(marker), 모든 언어 공동체를 전형으로서 특징지우는(typify) 대규모의 가치판단적인(value laden) 상호 작용 영역’이다. (Fishmen p.42) 문화적 유산과 마찬가지로, 문화 구조와 역사에 속해 있다는 감각은 정서적 안전과 인격적 힘의 원천으로 자주 인용된다. 그것은 우리의 주체로서의 감각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의 우두머리들에 의해서도 인정된 바이다. 그들의 전략은, 억압받고 차별받은 자들에게, 역사가 전혀 없다고 믿게끔 만들어 실패하고 의존적이며 무능력하고 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략은 인격적 주체성에 대한 감각이 그 사람의 문화적 유산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치에 닿는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녀에게 힘이 없다는 이미지를 느끼게 하려고 역사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42 동일한 결론이 역사적 증거에 의해서도 시사된다.

(인용문 시작) 인간은 그들의 [문화적 결사들] (차별 같은) 성원권의 부정적인 비용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포기하기를 매우 주저한다. 이것은 집단이, 개인을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행위하도록 동원(mobilizing)하며, 필요와 욕구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을 도우며, 자아 정체성을 현저하게 구성하는 강한 애착의 장소(locus)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개별 성원의 자신감과 자존감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Svensson p.436)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끝)

이 경향은, 특히 북미의 원주민 역사에서 명백히 존재해 오긴 했지만, 전세계적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역으로, 강제적 통합 조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록 종종 관대한 의도로 고안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조치-1950년 미국 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인디언의 특별한 지위를 종료하기로 하는 정책은 비참한 실패로 자주 끝이 났다.(Kronowitz et al. pp.533-4) - 통합의 축진은 문화적 멤버십을 보호하는 것만큼은 작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동하지 않는 일이 자주 있다.

33 이런 저런 방식으로, 문화적 멤버십은 인격적 주체(personal agency)와 그 발달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그녀의 문화적 유산을 박탈당하면, 그녀의 발달은 저해(stunted)된다. (Claydon pp.134-6) 그러므로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적 멤버십을 존중하는 것과, 그들을 다른 문화로 옮겨가도록 촉진하는 것은 동등하게 정당성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모욕된(affront) 소수 집단이 후자의 정책에 대해 느끼는 것은 실질적인 해악의 지각에 기초하고 있다

34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구성적 성격은 인간 사고와 발달의 보편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현존하는 형태가 갖는 우연적 사실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건 아니건, 이 현상은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며,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적 멤버십으로부터 끌어내는 혜택과 강제로 통합된 해악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이 현대화하는 조건 하에서는 감소하리라는 추정, 몇 십년 전에는 흔했을 추정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거짓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proved breath-taking false) (Gellner; Nicholls p.58)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공동체를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5 그런데 문화적 멤버십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배려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롤즈가 그것을 기본적 가치임을 명료하게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사람들은 롤즈가,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의 문화적 맥락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롤즈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도 개인이 사회 바깥에서 자족적인 존재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도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앎은 존재라고 믿는 '원자론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6 그러나 내가 5장에서 논했듯이 롤즈는 그런 의미에서의 원자론자가 아니다. 롤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de novo)가 아니라[역자-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 갔던 이들의 모델과 삶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Rawls 1971, pp.563-4) 그리고 그는 밀의 자유를 위한 논변을 지지하는데, 그 논변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발달을 (personal development)을 위해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구조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크게 기대고 있다. (Rawls 1971 pp. 209-10-2장이전을 보라) 마찬가지로 드워킨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상상력 넘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일에 있어 문화적 구조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공동체의 문화적 구조의 핵심은 그것의 공유된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언어와 구조는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에 있어 풍요롭게 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문화적 구조를 물려받았으며, 단순한 정의에 근거하여,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만큼은 풍요로운 상태로 그 구조를 남겨줄 어떤 의무가 있다’고 결론 짓는다. (드워킨 1985 pp.230-233)

37 그러나, 만일 롤즈도 드워킨도 선택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문화적 멤버십을 기본적 가치나, 정당성 있는 요구권의 토대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더 수수께끼가 된다. 내가 생각하는 그에 대한 답은 자유주의에 있어서 심층적이고 기초적인 흠결(foundational flaw)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롤즈와 드워킨이 대부분의 전후 정치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일한 문화적 공동체와 정치 공동체가 일치하는 국민국가의 매우 단순화된 모델로 작업했다는 간단한 사실에 놓여 있다. 물론 문화적 선택권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나라에서도 여전히 기본적 가치이다. 그러나 그것은 차등적인 권리 요구의 원천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활용가능 일종의 공공재이다. 그것은 그러한 나라에서는 부정의한 불평등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하나의 문화적 구조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부정의한 불평등을 파악하고 시정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38 문화적 동질성의 추정은, 위에 인용된 드워킨의 주장에서도 발견된다. 즉 그것의(its) 공유된 언어에 중심을 둔 ‘하나의 문화적 구조를 물려 받았다’ (we inherited a cultural structure) 는 것이다. 그 구절에서 ‘우리’는, 미국의 정치적 공동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의 문화적 구조나 공유된 언어를 갖고 있지 않는다. 롤즈도, 정치적 공동체나 문화적 공동체를 같은 방식으로 동화시킨다. 그는 “기본구조는 사회 시스템이 특정한 문화 형태를 시간에 걸쳐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Rawls 1978, p.55) 기본구조는 정치 공동체의 속성이며, 그것을 그 안에 단일한 문화적 구조만 있으리라는 롤즈의 추정을 전혀 보증하지 않는다.

39 그러므로 드워킨과 롤즈 모두 문화적 구조(사람들의 선택 맥락)라는 관념을 요구하고 그것에 호소하며, 그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문화의 성격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 와는 구별이 가능하다. 양자 모두 문화적 구조, 선택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이것이 특정한 시점의 문화의 특정한 성격의 보호를 요구한다는 데블린의 주장을 거부한다. 그들 모두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내가 위에서 논한 의미에서 인정한다. 그들이 그것에, 정당성 있는 요구의 토대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각 정치 공동체 내에는 그러한 문화적 구조가 오직 하나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 추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추정을 버린다면,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기본적 미치는 부

정당한 불평등의 가능한 원천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다음 장에서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진짜 있는 가능성이라는 점을 논하겠다. <끝>

제목: 월 키피카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제 9장 “소수자 문화를 위한 평등”

요약번역: 이한

1 만일 앞 장의 논변이 옳다면,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의론에서, 문화적 멤버십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accord)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지지하는 정의의 원칙이나 그들이 추천하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화적 멤버십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자원과 자유의 피부색에 무차별한(colour blind) 평등주의적 분배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쨌거나 자유주의적 평등은 상이한 집단이 아마도 상이한 문화적 멤버십을 포함하여 상이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수용(accomodate)하는 데 말이다. 각 사람은,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평등한 자원과 자유의 몫을 부여받는다. 왜 캐나다 원주민들 같은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등한 몫 이상을 가져야 하는가?

2 캐나다 맥락에서의 문제의 일부는 원주민 집단이 사회적 자원의 평등한 몫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평은 확실히 타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부색에 무차별한 사회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에 관한 것이지, 그 목표에 어떤 흠결이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원주민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만을 정당화하지, 영구적인 헌법적 차등 대우(differentiation)는 정당화하지 못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아무런 반대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 왔듯이 그러한 평등 실현 조치는, 캐나다 인디언들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폐지하려 했던 1969년 법안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왜 원주민들이 평등한 권리와 자원을 넘어서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보유해야만 하는가? 자유주의적 평등관에 대한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내가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추상적 평등주의 판(plateau)’에 정초되어 있다. 그것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심이 중요하며 평등하게 중요하다(matter equally)는 주장이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 그리고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 제도는, 이 도덕적 평등이라는 관념의 요구 사항의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spelling out)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들이다. 그리고 그들 이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론 둘 다 자유주의적 평등관에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특성을 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두 이론 모두에서 각 시민들의 이해관심은, 두 사회제도와 절차, 즉 경제적 시장과 다수결 정부의 정치 절차에서 평등한 고려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으며 둘 다 부정의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제도들이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정치적 권력의 사회에서 작동한다면,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약된다면, 평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존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제도들이 각 사람들의 선택이 평등한 비중을 갖는 의사결정 절차의 결과를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로 삼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의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의 타락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제약을 받아 이 제도들은 사람들의 선택을 사회적 결과로 공정하게 번역(translate)한다. (예를 들어

Dworkin 1978 pp.128-36을 보라)

4 그러나 7장에서 논의된 북부 캐나다의 원주민을 위한 이러한 제조들의 결과를 상기해보라. 시장과 다수에 의해 내려진 정치적 결정의 영향은 원주민 집단이, 문화적 공동체와 같이 그들의 생존에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돈이 없어 밀리거나, 표가 모자라 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may well be) 그들은 중요한 자원을 살 돈에서 밀릴지 모르며(예를 들어 그들의 공동체가 의존하고 있는 토지나 생산수단) 결정적인 정책 결정에서 표결에서 질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가 사용될 것인가, 또는 공공 노동 프로그램이 원주민의 노동 패턴을 지원하는가 아니면 그에 상충하는가에 관하여). 원주민 지도자들이 비원주민들의 이주, 재산, 투표권에 대한 제한을 변호한 것은 이러한 가능한 위협 때문에 한 해운이었다.

5 이것은 소수자 권리 주장의 심장에서 충동을 제기한다. 제안된 조치들은, 일부 사람들을 선택을 사회적 결과로 번역하는 데 활용된 경제적 과정이나 정치적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캐나다 북부에서 이주 노동자와 주민 공동체의 경우에 사람들의 문화적 멤버십을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로 보인다. 문화적 멤버십은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성원으로 존중하면서 대우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권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특별한 권리들의 영향은 정치 결정 절차와 경제적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6 그런데 내가 단순히 나쁜 다수결 의사결정 모델을 채택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우리가 더 나은 결정 모델을 가진다면 인종 무감한 자유주의적 평등으로 충분할 것인지 모른다. 아마도 캐나다 원주민들의 문제는 특별히 문화적 멤버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속되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일 것이다- 평등한 몫을 받는 문제. 그러한 소수자들은 지역적 정체성 귀속(regional identification)에 기반을 두고(예를 들어, 다수가 항상 다른 곳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투표할 때 한 지역의 정부 투자를 욕구하는 것) 또는 여가 정체성 귀속(다수가 항상 수영장을 지으라고 투표하는데 오페라를 원하는 것)이나 문화적 정체성 귀속(다수가 영어 사용 학교와 여가 리조트를 원할 때 그들 고유의 언어로 배우고 일하길 원하는 원주민들). 만일 이 소수자들이 인구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면 그들은 전체 시민의 40퍼센트를 얻어야 한다. 그들이 항상 60대 40으로 모든 투표에서 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문화적 멤버십을 보호한다는 어떠한 발상에도 기대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있는 100개의 표를 줄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이슈에 하나씩 쓸 수도 있고(아마도 그것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아껴두었다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몇 안되는 이슈에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리조트 건설을 제안하는 입법을 기각시키기 위해 또는 공립학교 교육에서 영어를 강제하는 입법에 반대하기 위해 아껴둔 그들의 모든 표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이해관심을 가진 몇몇 다른 이슈에서는 지게 되겠지만, 그렇게 저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의 선호는, 순환전 다수가 방지된 이후에조차 비원주민들의 선호보다 더 중요하게 계산되어야 하는가?

7 대신에 내가 그 질문을 뒤집어 보겠다. (Let me instead turn the question around) 왜

개인들이 이 절차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러한 절차는 애초에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관철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명백해 보일지는 모르나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이 의사결정 절차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한 자유주의적 설명에서는 작동하는 강력한 평등관이다. 이 평등관은 3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여망을 다른 이들의 정당성 있는 이해관심에 비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원이 다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각자에게 올바르게 보이는 것에 대한 감각과 관련(figure in)되어야 한다. (Dworkin 1981 p.289) 우리는 우리의 결사와 애착을 포함해 우리의 계획을 형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

8 우리의 목적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이 강조는, 미국 흑인 분리의 부정의함을 설명하는 것도 돕는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싶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심지어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을 증진시켜준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 백인들의 주장은 평등의 가르침에 의해 숙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공유된 목적이, 흑인들의 권리보다 비중이 낮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도덕적 충돌을 겪고 있다는 허위의 인상을 시사한다. 즉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이 다른 이들의 권리와 형량될 어떤 정당성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 말이다. 이것은 평등에 대한 복지론자의 이론에서 나오는 그림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원 평등의 구조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은 아무런 도덕적 무게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의 정의로운 요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롤즈가 표현했듯이 ‘정의의 우선성은 부분적으로, 정의의 위반을 요구하는 이해관심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의하여 설명된다’(Rawls 1971, p.31)

9 책임과 평등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그림은 복지 기반적 평등관에 대비되는 자원 기반적 평등관에 핵심적인 것이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견해에 고유한 것이며 내가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것이어서 평등에 대한 어느 포괄적인 이론에서도 일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본다. 이것은 시장에 자유주의자들이 끌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특정한 배경적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시장은 내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측정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시장 분배는 공정한 분배가 된다. (Dworkin 1981 p.305) 자유주의자들은 시장 (또는 시장의 결과를 모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부나 선호 충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좋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은 무엇이 사실상 형평을 만족시키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사람들의 선택을 형성하고 집계함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한 이 강조는 자유주의적 이론의 오직 반에 해당할 뿐이다. 그것은, 선택되지 않은 것들, 즉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인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전제한다. 선택과 환경(choices and circumstances)의 구별은 사실 자유주의적 기획에서 절대적으로 중심적인 것이다. 그들의 자원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차이는 그들의 선택 결과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발생할 지도 모른다. 그러한 편차는 정당성 있게 상이한 취향과 선호,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상이한 신념과 태도’(Dworkin 1981 p.203)를 반영한다.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생긴 차이는 그들의 책임이다. (주석3)

11 그러나 사람들의 환경(circumstances)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는 -그들의 환경(environment)이나 천부적 재능-분명히 그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누구도 출신 계급이나 인종을 선택하지 않으며, 타고난 재능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태들로 인한 불리함을 겪을 응분이 없다. 그것들은 롤즈의 유명한 표현을 따르자면,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재능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상하는 것을 찬성한다.

12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특수한 권리나 자원에 대한 요구가 차등적인 선택이나 불평등한 환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값비싼 취향을 계발한 이는 특별한 공적 보조를 정당성 있게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선택의 비용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천부적 장애로 인해 비싼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특별한 공적 보조에 대해 정당성 있는 요구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녀는 불리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13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원주민 권리는 비원주민들의 권리와 자원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는 이 권리 주장을, 선택-환경 구분선 어느 쪽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만일 원주민들이 그들이 선택한 기획을 증진하는 것으로 옹호되었다면, 그 요구는 자유주의적 견해에서는,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원주민들의 선택을 단절시켜 보호하는 (insulate), 정치적 권력의 불공정한 사용이 될 것이다. 원주민들이 예를 들어, 사회의 많은 집단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대규모 토지의 한 구획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그 토지만 때어내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겨둘 것을 요구한다고 해보자. 그로 인한 이득은 오직 원주민들에게만 돌아가는데도 말이다. 그러한 경우에 원주민들은 그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값을 부르고 그 토지를 구매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욕구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자원이나 표를 모아서 그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일 원주민들이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기로 소망하는 토지가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다면, 그들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들이 이 비용이 드는 욕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정하다는 특별한 정치적 권리의 존재는 그들이 그들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원주민들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결정을 다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고려함 없이 기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4 그러나 우리는 원주민 권리를 공유된 선택이 아니라 불평등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옹호할 수 있다. 지배적인 프랑스 문화나 영국 문화와는 다릴 원주민 문화 공동체의 존재 자체는 그들을 둘러싼 비원주민 다수의 결정에 취약하다.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존속에 결정적인 자원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돈이나 정치에서의 투표에서 밀릴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다수 문화의 성원들은 단순히 직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멤버십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원을 써야 한다. 그런데 이 성원권은 비원주민들은 공짜로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주민이나 비원주민 개인이 내리는 특정한 선택의 비용과 무관하게 참이다.

15 이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드워킨의 자원 평등 구조(scheme)를 사용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유사한 결론이 롤즈의 차등 원칙을 사용하여도 성립한다고 보여질 수 이 다) 드워킨의 구조에서 우리는 배가 무인도에 난파되고, 그곳의 활용가능한 사회적

자원이 승객들에게 경매된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승객들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각 사람은 동일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시작하며, 재화들의 최종 가격은, 그 개인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린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들 자신이 가진 자원의 묶음보다 다른 이들이 가진 자원의 묶음을 선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다양한 자원을 구매하는 평등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망 검사envy test)

16 그것을 한 번 더 공상적이기도 (at once more fanciful and more realistic)하고 더 현실적이기도 한 사례와 비교해보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배가 그 섬에 난파하였고, 경매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그들은, 배를 떠나지 않고 경매를 시작한다. (자원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이미 그 전에 출판물이나, 한 쪽 배의 탐사팀에 의하여 수집되어 컴퓨터로 전송되었다.) 경매가 진행되자, 두 배의 승객들은 선택한 상이한 삶의 방식의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각 배의 10퍼센트가 명상적인(contemplative)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자원들에 입찰하고(bid for) 20퍼센트가 기업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자원들에 입찰하는 등등. 마지막으로 모든 자원들이 경매되고 나서(all bid for), 그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disembark) 그들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공통된 컴퓨터 언어의 사용에 의해 가려졌던 사실, 즉 두 배가 상이한 국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은 이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합당하게, 그들의 자원이 섬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그들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을 외국 문화(alien culture)에서 실행해 나가도록 강제된다-예를 들어, 그들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의 상부 구조가 확립되었을 때는 법원, 학교 그리고 입법부 등등에서.

17 아마도 그들은 경매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그들의 입찰가(bids)를 수정하는 것이 허용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문제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 자원의 묶음의 측면에서(qua) 다수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사회적 자원 묶음을 선망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원 묶음은, 그들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이다. 그들이 선망하는 것은 다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맥락, 즉 그들 자신의 문화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자원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수 집단의 성원 역시 그들 고유의 문화에서 살고 일할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은 경매의 재개 이전에(prior to the rerun of the auction) 섬의 일부 구역에서의 자원을 사기를 결정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현재의 다수 소유자들을, 그들이 선택한 삶에 자원이 덜 유용하다는 점에 비추어, 더 높은 입찰가를 부르는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which would involve outbidding the present majority owners for resources which qua resources are less useful to the chosen way of life) 그들은 이 추가적인 비용을, 그들의 문화적 공동체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incur해야 한다. 이것은 다수 문화 구성원들에게는 발생(incur)하지 않는 비용이면서도 좋은 삶에 대한 상이한 선택 (또는 그 안에서의 문화적 멤버십의 중요성)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는 비용이다. [but which in no way reflects different choices about the good life (or about the importance of cultural membership within it)

18 다른 말로 하자면,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조치들은 그들의 선택을 보전받거나 특

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선택을 하기 전에 비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을 교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부 캐나다인의 자원에 입찰하기를 원하는 백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공동체의 안전은 의문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기로 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데 무엇이 유용한가에만 기초하여 입찰한다. 그들의 선택 맥락은 보호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비원주민들에게는 이와는 달리, 그들의 문화 구조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로 인해 그들이 그 구조 내에서 선택한 특정한 목표들을 추구할 자원을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된다.

19 이것은 원주민들의 선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평등이다. 아무런 기획도 없는 2살 배기 이뉴잇족 아기도 이 불평등에 직면한다. 특별한 정치적 보호, 예를 들어 일시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제한 같은 보호가 없다면 그녀가 18살이 되었을 즈음에는 그녀가 성장해온 문화적 공동체의 존속은,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훼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그녀가 어떤 기획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태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계 캐나다 소년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 불평등의 이런 교정(rectification)은 원주민 권리와 소수 집단 권리 일반에 대한 자유주의적 옹호의 기초다.

20 여기서 개진된 논변은, 내가 7장의 말미에서 언급한, 원주민 권리를 찬성하는 비자유주의적 논변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 논지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문화 공동체를 다른 이들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문화적 공동체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인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고유한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많은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트루도(Trudeau)에 의해 도입된 공용어(bilingualism) 정책이 그들의 문화를 프랑스계 캐나다의 문화 아래로 흡수(submerge) 시킬까봐 피해망상적인 반응을 보였다(paranoic). 원주민들은 그들의 문화 구조의 운명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망상(paranoia)이 아니라, 그것은 실재하는 위협이다. 캐나다의 영국계와 프랑스계는 그들의 문화 구조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들은, 원주민들이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하는 것을 공짜로 얻는다. 이것은 중요한 불평등이며 이것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중대한 부정의다. 특별한 정치적 권리는 그러나, 원주민 공동체가 비원주민 공동체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존속(secure)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불평등을 교정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을 하기도 전에 발생한 선택 맥락에서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특별한 정치적 권리는 필요하다.

21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이론은 드워킨의 용어로 “재능에 둔감하지만” “야망에 민감하”고자 한다. 즉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자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penalize) 불리하게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면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 (Dworkin 1981 p.311) 그러나 만일 그것이 목표라면, 소수 문화의 성원들이 그들의 선택이나 야망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과 자산의 산물인 불평등에 직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불평등은 원주민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이 더 이상 물질적 자원의 궁핍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게 되므로, 잠정적인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는 진정한 평등을 확보하기에 충분치 않다. 집단적 권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22 그러므로, 소수 집단 권리는,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원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캐나다 헌법 조항(3.5)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15.1항과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상이한 조항들은 동일한 평등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5.1과 3.5 사이의 관계는 15.1과 15.2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5.2는 불리한 집단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제공한다. 적극적 평등 조항(provision)이, 그 불리한 집단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Tarnopolsky p.259) 15.1에서 보장된 기본적 평등권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듯이, 원주민 권리의 보장도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그들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spelling out)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소수 집단 권리를 통해 불평등한 환경을 보상하고자 하는 요구는 모든 이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은 판사들이 그 근본적 요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돕는다

23 일부 논평자들은 소수 집단 권리는 15항과 화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과 원주민들의 집단적 권리를 ‘평등의 단일한 원칙’ 하에 캐나다인들의 개인적 권리와 화해시키는 ‘불가능한 과업’, ‘철학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된다. (Morton p.81; cf. Knopff 1982 pp.35-6; Penton; Weinfield p.70) 실제로 소수집단 권리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대표하여 통치하려는 전통적인 비평등주의적 주장’을 위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Knopff 1982 p.29; cf Knopff 1979 pp.72-6) 소수집단 권리는 ‘영혼의 건강’이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좋은 삶에 대한 일부 선택을 촉진시키는 자유주의 이전 정치(preliberal politics)의 측면들이다.(Morton pp.80-1) 그러나 그렇게 꼭 이해될 필요는 없으며 이들 여러 논평자들은 소수 집단 권리가 불평등한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선택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24 사실상 Knopff와 Morton이 인용하는 사례들 중 대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대응이다.(responses to circumstances not to choices) Knopff는 왜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언어권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언어 내에서 [사람들이] 영위해야 하는 종류의 삶을 명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Knopff 1979 p.75) 그리고 Morton은 집단 성원권의 통제에 대한 원주민의 관심이 고유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호에 왜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Morton p.81) 내가 7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리고 Morton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바, 이 분야에서의 원주민들의 요구는, 희소한 보호지역 토지에서의 인구 과잉의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다. (Morton p.76) 그들이 논의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나 원주민들의 소수 집단 권리는 한 선택 세트를 다른 선택 세트에 비해 우대하지 않는다. 그 권리들은 비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비해 전통적인 관습을 우대하지 않으며, 비종교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비해 종교적 라이프스타일을 우대하지도 않는다. 그 권리들은 소수 문화의 성원들에게 “영혼의 건강함”이라는 특정한 관념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으며, 다수와 다른 관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Morton과 Knopff가 자유주의적 평등과 전자유주의적 소수 집단 권리

사이에 발견한 불가피한 충돌은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제시하는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도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이 소수 집단 권리들은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구조를 확보하게끔,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평등을 증진하게끔 도와준다.

25 이 모든 것은 문화적 멤버십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 그러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을 타락시키는 환경에서의 불평등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과 항상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시장이 형평성 있게 (equitably) 작동하기 전에 공정하게 대처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장애를 타고 났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힘을 잃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 경우의 해결책은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어떤 보험 제도를 통해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제도가 Dworkin 1981 pp.297-9에서 기술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강제 이주 비용(displacement cost)을 커버하게끔 자연 재해의 희생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불한다. 우리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하여 그 발생을 막음으로써가 아니라 일종의 보험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대응한다. 문화적 동화를 겪어야 하는 비용에 대비해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드워킨이 그린 가상적 보험 시장의 변종을 차용하여, 그들이 지니게 될 문화적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적 공동체를 훼손할 사회의 정치 경제적 과정의 작동가능성에 대비하여 얼마나 보험을 들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보험제도에 따라 위험에 처한 소수 문화의 성원으로 태어난 이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26 그러나 내가 7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이 보상 제안은, 문화적 멤버십이라는 선의 특별한 성격을 오해하고 있다. 금전적 혜택은 천부적 장애나 자연 재해로 인해 생긴 불리함에 대한 공정한 보상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수단 세트를 통하여 그들의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을 부당히 제한된 것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적 멤버십은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맥락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감의 전제조건이자, 자신의 목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감각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문화적 멤버십은 개인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한 감각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문화적 정체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일정액의 돈과 바꾸라고 주문하는 것이, 그녀의 자존감을 일정액의 돈과 바꾸라고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돈을 보유하는 것은 그 대가가 그 내에서 목적이 추구되는 맥락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 사람들이 그러한 맞교환을 받아들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맞교환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캐나다의 인디언들이, 많은 현금을 보상으로 받고 그들의 토지 소유권 양도(relinquish)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음은 주목할만하다. 그 제안은 그러한 보험 정책의 급여 지급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7 그러므로 문화의 상실에 그저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특정한 문화 공동체에 속하는 우리의 성원권의 중요성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doesn't do justice) 그것은 소수 집단 권리가 보험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 보장범위

((insurance coverage)는, 곤궁을 보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천부적 장애의 경우에 우리는 보상 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커버하는 보험을 갖는다. 우리는 이와 유사하게 원주민 공동체들이 높은 입찰가를 써낼 능력을 주어 그들의 토지의 활용에 대한 공동체 훼손적인 제안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집단적 보험의 형태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왜냐하면, 보험 급여는 따로 떨어진 개인들에게로는 도움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집단으로서 원주민 공동체의 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안을 높은 호가를 압도(outbid)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보험이 고안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적합한 보험계획도 집단적 조직을 전제할 것이다. 원주민들은 집단적으로 혜택을 주는 보험을 받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28 이 집단적 보험 발상과 현재 캐나다에 존재하는 집단적인 정치적 권리 사이의 간극은 크지 않다. 문화 보호의 두 형태 모두 동일한 중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원주민 공동체의 개별 성원들은 다른 캐나다인들에 비해 그들의 개별적인 삶의 계획을 추구하기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갖지는 못하지만 공동체는 공동체의 존속을 훼손하는 다수의 결정을 미연에 방지(pre-empt)할 집단적 능력을 가진다.

29 이론적으로, 집단적 보험 제도의 일부 측면을 집단적인 정치적 권리를 활용함이 없이 시행할 수는 있다. 보험의 일부는 순수하게 금전적인 것으로서, 비정부기구인 원주민 기관에 제공되어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중요 자원에서 호가로 밀리지(outbid) 않도록 보장해주는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시장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제약도 확립시키지 않고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투표에서 수로 밀리지 않도록 할 집단적 권리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보호의 경우에도 정치적 조치를 위한 논변은 매우 강하다. 공동체를 비정치적으로 조직하려는 시도는,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집단 행동의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인구가 넓게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는 말이다. 더군다나 특별한 정치적 지위는 원주민 토지가 사적 소유되는 토지와 결부된 비-시장의 취약성(예를 들어 강제수용)의 일부로부터 보호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디언 토지를 양도간오하게 만드려는 캐나다 정부안에 대한 주된 반대는 개별 인디언들이 토지를 팔지도 못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토지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방식의 지방정부에 의한 강제수용(expropriation)을 당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어떠한 강제 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겠지만 통상적인 종류의 개별 법적 소유권자(title-holder)에 대한 보상은, 공동체가 이전되어 재설립될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Cardinal 1977 pp.91-2, 127) 그들이 공동체를 재설립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은, 어떠한 비정치적 보험 모델에서 상정된 것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필요로 할 것이다.

30 그러므로 나는 특정한 집단적 권리가, 원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서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옹호는 7장에서 논의된 모든 조치들을 커버하지는 않았다. 특히 추정되는(putative) 언어 권리의 부인은, 옹호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소수 문화의 성원들(예를 들어 인디언, 프랑수어권 사람[francophones])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 공동체 내에서 공정한 자원의 몫을 얻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공적 재정이 지원되는 영어 사용 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을 무엇이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소수 문화의 일부 성원이 영어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문화적 맥락을 보호한다는 관념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아무런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내에서 다른 언어 이외에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적 재정 지원되는 교육에서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은 예를 들어 그리스어가 아니라 영어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그들은 물론 그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선택하는 어떠한 언어로도 학교 체계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왜 공공 비용으로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에는 좋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이며 어쨌거나 영어 교육(teaching of English)만을 보증할 뿐이지, 영어로 이루어지는 교육(teaching in English)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응당 받아야 하는 존중의 일부로서, 근르의 공동체의 언어로 공공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공적 재정으로 지원되는 교육을 다른 언어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느냐는 아마도 정책의 문제 (문화 교류를 보조하는 문제처럼)로서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권리도 갖지 아니하며 그것을 금지할 권리도 갖지 아니할 것이다.

31 캐나다의 구 인디언 법의 가장 문제되는 측면은 특정한 결혼 선택에 불이익을 주고, 이 불이익이 적용되는 차별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태는 보호지역이 양도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장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인구는 확대된 구역을 점해야 하지만, 인디언들은 그들이 현재 보유한 토지 바깥에서 공동체를 통상 구축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공정한 몫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할 자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로는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개발 계획으로부터 보호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며 인접한 토지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원치 않는 동화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과잉 인구가 현존하는 보호지역을 위협할 때, 정부가 새 공동체의 구축과 보호에 조력하지 않아야 아무런 이유도 보지 못하겠다. (Robinson and Quinney p.147; M. Pum)

32 내가 아직도 논의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인디언 정책의 한 측면(캐나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은 특정한 보호지역에서 종교적 자유의 거부다. 미국 인디언 부족들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공식 종교가 있는 신정사회(theocracies)다. 다른 종교적 교파(denominations)의 성원들은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며 때때로 주택지원 혜택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Van Dyke 1985, pp.72-4; Weston; Svennosn pp.431-3)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디언 국가의 특별한 반(半) 주권적 지위(semi-sovereign status)에 의하여 옹호된다. 즉,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의롭건 아니건 우리는 거기에 간섭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사 독립국(quasi-independent nation)의 구조적 행위다. 인디언 부족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느낀다면 특정한 헌법적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미국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 대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지는 모르나, 인디언 구성원들은 극 권리에 호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권적인 인디언 부족의 행위는 그 보장에 온전히 종속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Elk v. Wilkins [1884] 112 US 94)

33 이 상황은, 그러므로, 내가 고려해왔던, 문화적 보호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정치적 평등에 대한 최선의 해석의 일부로서 옹호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미국 보호지

역에서의 신정 정치(Theocracies)는, 평등 보장의 해석이 아니라, 그 보장에 대한 면제로서 종종 옹호된다. 그러나, 종교적 지위에 대한 제한이 소수 집단 권리에 대한 나의 설명에서 옹호될 수 없는 이유를 검토할 가치는 있다. 꽤나 단순하게, 그에 관하여는 문화적 멤버십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등도 없어서, 그 제한이 그러한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푸에블로(Pueblo)족 보호 구역의 각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에서 살 능력은 프로테스탄트 성원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위협받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푸에블로족을 비푸에블로 사람들에 의해 결정적인 쟁점에서 돈에서 밀리게 하거나 표에서 밀리게 하는 데 취약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북부에서 이뉴잇족이 아닌 이들의 온전한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 해체(internal disintegration)을 창출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텔레비전이 인도네시아 부족에게 미친 결과와는 달리).

34 푸에블로의 많은 이들의 눈에는 ‘종교적 규범의 위반은 전체 공동체의 생존survival을 말 그대로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Svensson p.434) 그러나 사실은 푸에블로족은 조직된 프로테스탄트가 없는 지금만큼이나, 조직된 프로테스탄트가 있어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Weston p.249) 동성애의 수용이 말 그대로(literally) 영국 공동체를 훼손할 것이라는 데블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제시된 모든 증거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dissident) 실천(practice)에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혐오 밖에 없다. 만일 그 목표가, 각 사람이 그들이 선택한 삶을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공동체 내에서 평등하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면, 종교 제한은 전혀(in no way) 그 목표를 증진하지 못한다. 신정정치(theocracy)가 종결된다고 해도 푸에블로족의 다수 구성원들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dissident) 소수자들만큼이나 또는 비인디언 공동체의 구성원들 만큼이나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경험을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보다 그들 고유의 공동체에서 고유한 삶을 살 능력이 덜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문화적 멤버십과 관련하여 평등한 존재보다 못하게 대우받는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내가 8장에서 논하였듯이 문화적 공동체의 불관용적인 성격(intorelant character)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 멤버십을 지지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의미 있는 개인적 선택을 허용한다는 이유-를 훼손한다. 인디언 보호지역에서 다수가 소수의 종교적 자유를 부인할 때 다수를 지지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쓸데 없고 부정의한 해악을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35 따라서 소수 권리에 대한 나의 설명 중 어느 것도 문화적 소수 집단 내의 지배적인 집단이 그 공동체의 나머지 이들이 공동체의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 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나의 이론은, 소수 문화 내의 개인의 권리를 굽힌(compromise)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미국연방대법원이 푸에블로족의 종교적 권리를 결정하거나 관철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인디언의 개인의 권리나 집단의 권리나 이를 존중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끔찍한 미연방대법원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푸에블로족은 그들의 부족 법원(tribal court)에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might well wish) 만일 그것은 푸에블로족 사이에서의 합의라면 확실히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 인디언이 인디언 민권법[Indian Civil Rights Act]의 해석과 집행[enforcement]을 위해 부족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

하면서 최근 미연방대법원이 취한 입장이다.(Santa Clara Pueblo v. Martinez [1978] 436 US 49)} 만일, 다른 한편으로, 법원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어떠한 형태의 외부적 사법심사(external review)를 원한다면 그 쟁점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much cloudier) 이것이 캐나다의 상황처럼 보인다. 원주민 집단의 많은 이들은, 원주민 자치 정부에 대한 외부적 심사에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 여성 집단들은 외부의 심사를 추구하여 왔다. 원주민 권리를 어떻게 가장 잘 자리잡게(entrench)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를 무시하는 것은(override) 그를 것이고, 합의와 발전을 복돋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라서 이 문제를 대처할 어떠한 명백한 정식도 나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어쨌건 내 관심은 집행되는 원칙이 무엇이여야 하는가이지, 이 원칙들을 결정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평등론에서는, 소수 문화 집단에게 문화적 멤버십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원칙을 존중하는 바로 그 이유가, 그 집단들의 개별 성원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원칙을 존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6 따라서 소수 문화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정당성을 위한 자유주의의 논변은 모두 내장된(built in) 한계를 갖고 있다. 각 사람들은, 그녀가 선택한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의 문화적 경험을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은 문화적 구조가 그 문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해체하는 효과로부터 안전하게 확보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내의 각 사람들이 제공된 선택지 중 가장 가치 있다고 그들이 이해하는 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잠정적인 제한이 문화적 취약성의 예외적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는 한 말이다.)

37 그러나 푸에블로족 공동체가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정말로 해체된다면 어쩔 것인가? 그렇다면 종교 자유 제한이 정당화될까? 만일 정당화된다면 문화적 멤버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것들은 난해한 질문들이다. 비록 내가 8장에서 논했듯이 그것은 소수 집단 권리의 주장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만큼이나 자주 제기되는 것도 아니고, 소수 문화의 상황에만 유독(unique)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비이상적 또는 ‘불완전 준수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들 각각은 이제까지의 논변과 일관된다. 불완전 준수 조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정당성 있는 요구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거나(노직이 ‘권리 공리주의’ utilitarianism of rights라고 부른 것), 특정한 정당성 있는 요구를 그 결과가 전반적인 요구 침해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침해 불가능한 것으로 존중하거나(노직이 ‘측면계약 side-constraint’이라고 부른 것). 이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개인의 요구도 침해불가능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한 유형의 요구는 다른 유형의 요구에 절대적 우선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문화적 멤버십은 개인의 선택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성원의 권리에 대하여 우선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또는 거꾸로 문화적 멤버십의 가치는 개인의 선택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므로 개인의 권리가 문화적 멤버십에 대하여 항상 우선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문화적 멤버십은 때때로 개별 권리에 우선하지만 때때로는 우선하지 않으며 이는, 무엇이 전반적인 요구 침해를 최소화할지 뿐만 아니라 요구 침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지속하며 형평성 있게 분포될 것인지 그리고 개별 성원이 다른 문화에 동화되기로 선택하는 길(avenues)들이 존재하는지에도 달려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상적 이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도 어느 불완전 준수 원칙을 활용할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상적 이론에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동일한 불완전 준수론을 공유할 수 있다.

38 이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은 요구되는 특정한 희생의 종류와, 이상적 이론과 불완전 준수론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질문들에 관한 탐구를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상충하는 가치들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요구나 어떤 일련의 요구들이 다른 요구들에 비해 절대적인 우선성을 갖는 것은 가능할 법하지 않다. 소수 집단 구성원의 내부적 활동에 대하여 정당성 있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활동들이 공동체의 존속을 말 그대로 위협할 때에, 정확한 한계를 찾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합당하게 세부적인 지식 없이 어떠한 유용한 대담도 얻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직관이 상이한 방향으로 끌리는 복합적인 이슈이며, 나는 모든 관련하는 사례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어떤 간단한 정식도 알지 못한다.

39 그러나 내가 개진한(advancing) 소수 집단 권리에 대한 견해가 이 질문들의 답을 열린 것으로 남겨 두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화적 멤버십을 자유주의적 가치가 아니라고 거부할 이유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질문들은 문화적 멤버십이 기본적 가치(primary value)가 아니었다면 자유주의자들에게 그러한 충돌을 노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당성 있는 요구를 반대할 아무런 도덕적 가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문제가 있으며, 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어떤 이론도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다. 어느 경우건(In any event) 문화 보호의 일부 조치들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정확한 적용은, 상황의 변이에 따라 달라지고, 그 조치들의 가장 바깥쪽의(outermost) 경계는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일단 문화적 멤버십을 우리의 선택 밑에 전제된 중요한 기본적 가치로서 인정한다면, 소수 문화를 위한 특별한 정치적 권리와 지위는 요구될 것이다.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이 선택의 맥락은 일종의 공공재로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활용가능하다. (적어도 교육 등에서 격차가 없는 정의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멤버십을 기본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에서의 자원 평등과 관련하여 롤즈나 드워킨이 도달한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정말로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그 선택 맥락의 보호를 정치적 권리(또는 경제적 보험)의 고유한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가 그러한 권리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보다는, 선택 맥락의 취약성(vulnerability)는 소수 집단이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근거가 항상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들의 요구가 성공하느냐는 많은 요인들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존재한다고 이야기되는 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잠정적 권리가 실제로 그 불평등을 교정하는 데 기여하는지.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 요구에 대해서는 13장 이하를 보라) Sigler가 주목하듯이, 소수 집단 권리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은, 실제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요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것은, 많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나라들의 현존하는 관행, 그러한 이론 없이도 있었던 관행들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Sigler p.196)

41 이것은 드워킨의 정치적 도덕의 수정을 요구하겠지만 그는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기를

원해서는 안된다. 내가 8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드워킨은 문화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문화 구조]를 적어도 우리가 발견한 정도로 풍부하게 남겨두어야 할, 단순한 정의에 근거한 어떤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Dworkin 1985, p.233) 만일 그렇다면, 소수 문화 구조를 해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다. 그리고 소수 문화의 취약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므로, 드워킨 자신의 평등 이론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보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의 원주민 권리의 체계는 문화적 멤버십에 대한 우리의 인정으로부터 나온, 비용을 공정히 분배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끝>